

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신규대비표＞

현행	개정안
제8조(부과금의 부과기준)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8조(부과금의 부과기준) ① --- ----- ----- ---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.
1. 삭제	1. 삭제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부탄 : 1톤당 62,283원</u>	3. <u>부탄</u> <u>가. 2026년 12월 31일까지 : 면제</u> <u>나. 2027년 1월 1일 이후 : 1톤당</u> <u>62,283원</u>
4. 삭제	4. 삭제